

교원 재임용지침

제1조 (목적) 본 법인 정관 제41조 제2항 및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5장에 의한 교원의 재임용을 엄정하고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사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교원 재임용에 관하여 정관 및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 (교원 재임용기간) 본 법인 정관 제41조 제2항에 의거 교원 재임용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삭제<2012. 9. 28.>
2. 부 교수 7년
3. 조 교수 6년
4. 삭제<2012. 9. 28.>
5. 삭제 <2011. 1. 28.>

제4조 (평가내용) 교원 재임용 평가 내용은 교육, 연구, 봉사, 근태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① 교육, 연구, 봉사에 관한 평가 내용은 교수업적 평가규정과 그 시행세칙에 따른다
- ② 근태에 관한 사항은 평가 영역을 교수로서의 기본자질(40), 대학에 관한 기여도(40), 신앙 및 교회/사회에 대한 기여도(20)로 구분하여 총 100점으로 평가되고 판정은 각 평가 영역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75점 이상을 합격 평점으로 한다.
<개정 2011. 9. 1.>
- ③ 연구실적물의 심사는 교수업적평가 시행세칙에 따른다.
 1. 연구실적물에 대하여는 해당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실적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체계를 갖춘 것으로 한다.
 2. 선교사 전임교원은 연구실적물 평가는 하지 않는다.
 3.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평가한다.
<신설 2015.09.01.>
- ④ 비정년 교원의 재임용 및 재계약을 위해서는 매년 교육영역 600점, 연구영역 35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

제5조 (심사방법) ① 교원 재임용을 위한 근태 평가는 임용대상자 직급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지명하는 3인이 각각 평가하여 산술 평균한다.

- ②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평가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1. 1. 28.>
- ③ 삭제 <2011. 1. 28.>
- ④ 삭제 <2011. 1. 28.>

제6조 (재임용시기) 재임용은 임용일 기준에 의하며,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에 행한다.

제7조 (재임용 절차) ① 피임용자는 재임용신청서와 기간 내의 교수업적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한다.

- ②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근태평가조서”, “교수업적평가보고서”에 대한 심사와 교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교원 재임용을 제청한다. <개정 2011. 1. 28.>

제8조 (소명기회 부여) 평정결과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총장은 탈락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절차는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지침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위의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교원 인사관리지침을 준용한다.
3. 본 지침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지침은 2000년 1월 4일부터 적용한다.
5. 본 개정 지침은 2000년 3월 28일부터 적용한다.
6. 본 개정 지침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규정의 개폐) 이 지침의 개정 및 폐기는 기획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개정 2011. 1. 28.>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본 지침 제4조 제②항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